

윤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14.11.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건학이념인 인·의·예·지·신의 상지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구성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교원, 직원, 학생 및 조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구성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 (품위유지 등)

구성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폭력·폭행 기타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구성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외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해 따로 개별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 윤리 준수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 ① 연구의 범위는 논문, 저서, 역서, 예술작품 등 모든 저작물을 총칭한다.
- ② 구성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실험 윤리 준수

제7조 (생명 윤리 및 동물 실험 윤리 준수)

- ① 구성원은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직무 윤리 준수

제8조 (직무윤리 준수)

- ① 구성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상지대학교 교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지침」에 의한다.

제9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구성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의 누설 금지)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구성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관계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구성원은 연구비 · 출장비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명한 회계관리)

구성원은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과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면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에는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1인 이상, 여성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구성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윤리강령의 제정
2. 윤리강령에 의거한 윤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발의
3. 윤리강령과 윤리 관련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4. 총장이 심의 요청하는 윤리 관련 사항 또는 사건
5.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6.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실무소위원회)

위원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교무처 교무부장이 된다.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특정 구성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강령과 윤리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특정 구성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강령과 윤리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별첨2)의 신고서에 의거 신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된 사항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것일 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21조 (조사절차 등)

① 위원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급 기관 및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 (재심의)

①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위원장 포함)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비밀유지의무)

①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②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재직 시에 또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일체의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2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8조 (허위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피조사자의 명예를 손상하려는 의도로 허위 신고한 제보자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 (윤리강령)

이 규정을 근거로 윤리강령(별첨1)를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30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8장 기타

제31조 (보완)

- ① 총장은 대학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 윤리 관련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 ② 총장은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상지대학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운영경비)

총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획예산부-896. 2014.11.14)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윤리강령

I. 교원의 윤리강령

- 교수는 모든 행동에 있어 건학이념인 상지정신을 존중하는 대학 교수로서 양식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한다.
- 교수는 교육자로서 지식의 진보와 가치를 인식하면서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매진한다.
- 교수는 학생의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와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한다.
- 교수는 연구자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교수는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국가 사회의 시민임을 인식하고, 임무 수행의 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보편적인 공동선을 추구한다.
- 교수는 인격자로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사표로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 교수는 상지인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교육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수가 된다.

II. 직원의 윤리강령

- 직원은 모든 행동에 있어 건학이념인 상지정신을 존중하는 대학 직원으로서 양식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한다.
- 직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대학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직원은 섬김의 자세를 갖추고 끊임없는 혁신활동 및 성심을 다한 서비스를 통하여 최선의 가치를 제공한다.
- 직원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경쟁 질서와 원칙을 존중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직원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그 책임을 다한다.

III. 학생의 윤리강령

- 학생은 모든 행동에 있어 건학이념인 상지정신을 존중하는 대학 학생으로서 양식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한다.
- 학생은 상지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상지정신의 자긍심을 가지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학생은 지성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며 학업과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 학생은 모든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 학생은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의를 다한다.
- 학생은 교직원에게 예를 갖추어야 하며, 지도에 따라야 한다.
- 학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IV. 조교의 윤리강령

- 조교는 모든 행동에 있어 건학이념인 상지정신을 존중하는 대학 조교로서 양식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한다.
- 조교는 학생의 잠재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수의 교수행위에 협조한다.
- 조교는 대학의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사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별첨 2

신고서

1. 신고인

(익명의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근무처 (직업) : ○ 직 위 :
 - 전 화 : (핸드폰) (사무실)

2. 피신고인

- 주 소 :
 - 근무처 (직업) : ○ 직 위 :

3. 신고 요지

4. 신고 이유

5. 입증자료(그 사본을 첨부함)

년 월 일

신고인 (인)

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익명의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